

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5. 28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5. 28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6. 24 (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자 :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
- 나. 폐지사유
 - 먹는물 관리법 및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이 조례에 의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종전의 화순군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함.
- 다. 주요내용
 -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본 조례 폐지안은 불필요한 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 "

첨 부 :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7-7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. 28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먹는물 관리법 및 화순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이 법에 의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함.

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(안)

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